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52 발의연월일: 2025. 4. 8.

발 의 자:이철규·강승규·이인선

김선교 • 유상범 • 박상웅

서명옥 • 박성민 • 구자근

김소희 · 김미애 · 나경원

박충권 · 서일준 의원

(14인)

제안이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과 중간 경로로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면서 주요 이행과제로 석 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반영하였으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실업,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 지역 사회의 활력 저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 소와 관련 있는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실업 예방, 지역사회의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안 제1조).
-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 자,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로부터 2년 전까지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를 포함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5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승인 대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석탄화력발전기에 휴지보존, 계속 운전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6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 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안 제7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거나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위한 특별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해 조사·연구·평가, 대체산업의 발굴·육성, 창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활성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할 수 있으며, 관할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할 수 있음(안 제10조).
-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위하여 자금 등의 지원, 조세 및 부담금 등 감면,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차. 국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석 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사업재편 또는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상환 유예, 기간 연장, 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4조).
- 카. 발전사업자는 석탄화력발전기의 폐지 예정일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계약 방식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협력업체와 수의로 계약을 하거나 종전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사업등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 타. 기획재정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여 발전사업자가 대체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해당 투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종전 석탄화력발전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갈음하거나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안 제16조).

-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에 따른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 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전 「전기사업법」제25조에 따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 지된 석탄화력발전소도 이 법을 적용받음(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률 제 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 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발전시설 중 석탄을 주된 연료로하는 발전설비(이하 "석탄화력발전기"라 한다)가 모여 있는 발전단지를 말한다.
- 2.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란 석탄화력발전소에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3.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란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 자에 소속된 근로자와 해당 석탄화력발전소에 상주하며 상시적으 로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전력계통 영향분석"이란 석탄화력발전설비 폐지 및 대체사업 시

행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의 신뢰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로 인한 고용 및 지역경제 영향을 완화하고, 사업전환, 근로자 전직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시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승인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는 폐지 예정일로부터 2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이하 "폐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제외한다.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일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기 포함)

- 2.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재배치 계획
- 3. 대체사업 의향 또는 부지 · 설비 등 재활용 계획
- 4.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 5. 주민 ·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지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및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제1항의 폐지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폐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경제영향조사의 검토 등 폐지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발전사업자,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를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폐지계획 수립 및 검토 절차, 지역경제영향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력계통 영향분석 및 휴지보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

조제1항에 따른 폐지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과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석탄화력발전기에 휴지보존, 계속 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휴지보존, 계속 운전 등에 대한 보상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설치된 한국전력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휴지보존 및 계속 운전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제7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 2.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근로자 및 지역경제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 3.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설비의 재활용 및 대체산업의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 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거나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기회발전투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규제자유투구 및 지역특화발전투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투구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제9조(지역활성화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역활성 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 2. 지역에 특화된 대체산업의 발굴ㆍ육성
 - 3. 창업 촉진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 4. 그 밖에 지역활성화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정부에게 제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에서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시·군·구에 대한 보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할 수 있다.
- 제11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이외의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조세 및 부담금 등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 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 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사업재편 등) ① 국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

-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사업재편 또는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 및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상환 유예, 기한 연장, 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① 발전사업자와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업체는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기의 폐지 예정일이 3년 이내인 경우 또는 승인된 폐지계획의 폐지 예정일이 3년 이내인 석탄화력발전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계약 방식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협력업체와 수의로 계약을 하거나 종전의 계약을 연장할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발전인프라 재활용을 위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가 부지, 항만, 계통설비 등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기 존 인프라를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발전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여 대체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해당 투자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여 대체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종전 석탄화력발전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결과로 갈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인프라를 재활용하는 사업자에 게 전력계통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7조(재생에너지 보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전「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된 석탄화력발전소도 이 법을 적용받는다.